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¹⁾

이정립 연구위원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양육 현황을 파악하여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아동보호시설별 종사자 및 기관장 대상 심층 면담, 유아 대상 내적 표상 검사(MSSB) 등을 통하여 해당 영유아의 양육실태와 발달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은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²⁾ 해당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7월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 기관은 주로 입양

및 학대 관련 기관이 통합된 형태로서, 현재는 아동양육시설 등을 전담하는 중앙기관의 부재로 인해 이들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 기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조치 대상 아동은 총 3,918명으로 2010년 8,590명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³⁾ 다만,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줄어든 만큼 이들이 질 높은 양육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고 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등의 역할은 이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이정립·최정원·최윤경, 2019)」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3)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는 주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로, 이 때에 건강한 사회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정에서 친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영유아들과 달리, 아동보호시설에서 부모가 아닌 양육자와 생활하는 영유아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투자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세대의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기관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용어⁴⁾ 대신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인 아동보호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 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는 아동보호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각각 다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등은 없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유아 시기에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하

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과 성인 시기의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아동보호시설의 영유아 양육 실태

가.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담당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 경기, 충남, 마산 지역의 아동양육시설에서 만0세부터 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3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 현황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종사자 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아(0~2세)는 평균 4.2명, 유아(3~6세)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 법정배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특히, 영아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 및 별표 14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0~2세 영아 2명당 1명의 보육사 비율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정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는 경우는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있다.

집 중 조 명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서는 법정 인력배치 기준이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나,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보육사 1인당 아동이 6명 이상인 경우도 약 29%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함께 돌보고 있는 보육사는 평균 1인당 8.0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법정 배치 기준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유아에 대한 배치기준인 보육사 1인에 5명 이하를 초과하고 있으며,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은인 보육사 1인당 아동 7명의 기준보다도 높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원인

현 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서

질문한 결과, 영아와 유아 모두 베이비박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2 참조). 영아는 베이비박스가 1순위인 경우가 82.1%, 유아는 72.3%였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도 각각 87.0%,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베이비박스 다음으로 미혼출산과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5.6%로 낮은 비율이었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는 베이비박스 외 유기가 16.0%, 학대 및 경제적 어려움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는 베이비박스 다음으로 학대가 9.2%, 빈곤이 6.9%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는 학대가 30.6%로 베이비박스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베이비박스 외 유기, 빈곤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1인당 돌봄 영아/유아/영유아 수 영아/유아/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단위: %(명), 명

| 구분 | 1~2명 | 3~5명 | 6명 이상 | 계(수) | 평균 |
|------------------------------|-------|-------|-------------|------------|-----|
| 1인당 돌봄 영아 수 영아만 돌보는 보육사 대상 | 28.9 | 44.4 | 26.7 | 100.0 (90) | 4.2 |
| 구분 | 1~5명 | 6명 이상 | 계(수) | 평균 | |
| 1인당 돌봄 유아 수 유아만 돌보는 보육사 대상 | 71.3 | 28.7 | 100.0 (101) | 4.8 | |
| 구분 | 5명 이하 | 6명 이상 | 계(수) | 평균 | |
| 1인당 돌봄 영유아 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대상 | 36.1 | 63.9 | 100.0 (72) | 8.0 | |

〈표 2〉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영아 | | 유아 | |
|------------|------------|------------|------------|------------|
| |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이혼 | - | 0.6 | 1.7 | 5.2 |
| 가출 | - | - | 0.6 | 0.6 |
| 수감 | 0.6 | 0.6 | 0.6 | 2.3 |
| 학대 | 5.6 | 15.4 | 9.2 | 30.6 |
| 경제적 어려움 | 1.2 | 15.4 | 6.9 | 16.2 |
| 미혼출산 | 5.6 | 12.3 | 2.9 | 11.6 |
| 베이비박스 | 82.1 | 87.0 | 72.3 | 78.0 |
| 베이비박스 외 유기 | 4.9 | 16.0 | 5.8 | 20.2 |
| 계(수) | 100.0(162) | 147.3(162) | 100.0(173) | 164.7(173) |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영아와 유아 모두 베이비박스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베이비박스를 제외한 경우에는 영아와 유아 간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에는 현 시설에 오게 된 주된 이유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이 없었고 부모 수감의 경우도 낮았던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 가출, 수감인 경우가 있었으며, 학대의 비율이 영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나.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 대상 면담의 주요 결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을 포함한 총 36명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면담 참여자 36명 중, 양육시설 종사자가 총 12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8명, 일시보호시설 종사자가 5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4명, 위탁모가 7명이었다. 면담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확인되었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배치의 주된 이유가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종사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넷째,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

원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장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정위탁에 보호필요아동이 가장 적게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아동보호시설 유아 대상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애착표상(MSSB) 검사를 실시하였고, 전반적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뿐 아니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다. 이를 통하여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3.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내용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원칙은 이러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원칙

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필요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에 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 및 불일치한 지점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및 개선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원칙으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재고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 환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원가정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가정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과 개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유기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영유아가 전문성 있는 위탁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원가족으로 영유아가 복귀되기 전에는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경우 이들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위탁할 수 있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영유아를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유기, 학대, 부모의 수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가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부모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를 맡아서 돌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 및 영유아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상시 일정 수준의 위탁가정 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가정 지원과 더불어 정기적인 관리 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위탁가정을 모니터링하여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가정 풀을 구축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이고 내실화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 마련 및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가정의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여야 하는 원인(미혼모, 부모의 이혼, 학대, 수감 등)에 대한 분석 및 이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영유아의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유아가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가능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들 영아가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위탁가정 풀에 대한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 대 보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 현실화, 영유아 담당 보육사 배치 전 사전 교육 의무화, 양육시설 기능과 역할 전환 지원을 통한 탈시설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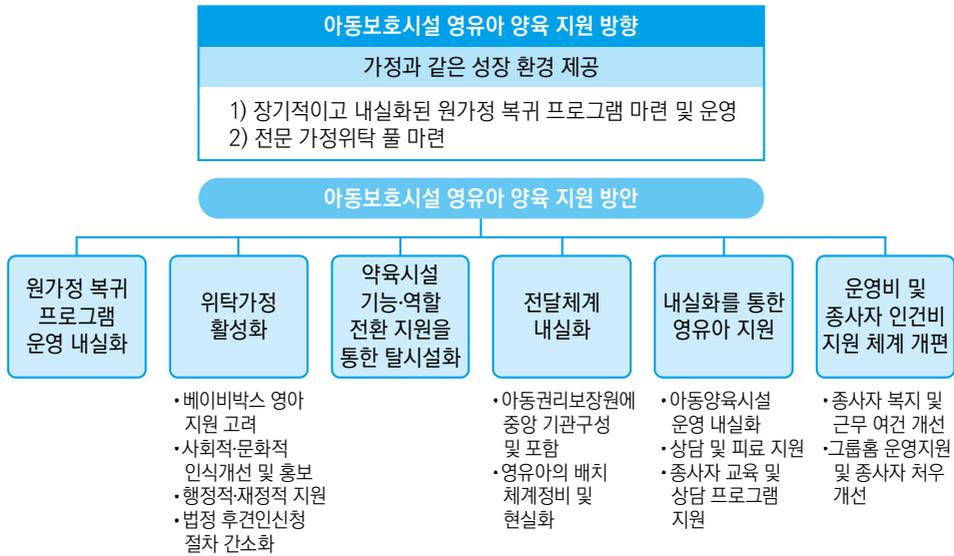
연구 결과, 영아 대상 보육사 배치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유,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성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임에도 영아를 돌보는 보육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아의 발달권과 보육사의 노동권 보호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생애 초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 결과, 현재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육사가 양육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몇 시간의 교육 등을 통하여 바로 양육 현장에 투입되거나 심지어는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양육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아 담당 보육사의 경우에도 아이를 낳아보거나 키워본 경험이 없는 20~30대의 보육사들이 바로 영아를 양육하도록 하는 실정이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 영아를 누군가를 돌봐야 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영아의 울음 및 영아의 상태 등에 관한 발달 지식이 없이는 민감하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영아와 보육사가 어려움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영유아에게 양육 담당을 위해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현장 보조 실습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최소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육사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촘촘한 방안을 마련하며,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6.25 전쟁 등으로 인한 고아 발생 및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아동을

돌보아 왔던 곳이 양육시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양육시설이 오랫동안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포함한 아동 양육을 통하여 전수되어 온 경험과 경륜을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이들 시설이 지역사회의 복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놀이 및 도서 공간,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제공, 지역사회의 쉼과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부모교육 제공의 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을 매입하여 일부 시설 등을 개조 및 증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시설을 축소할 수 있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위한 다기능적인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7월에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서 아동보호 체계를 하나의 통합 기관 형태로 만들어서 취약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있는 입양 및 학대 관련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통합된 기관에 포함되어 관리 및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보호필요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을 전담하는 중앙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형태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관한 조속한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든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중앙 아동



[그림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양육시설 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 이를 통하여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의 종사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없으면 그 대가는 돌봄을 받는 영유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동보호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조로 가는 한 지원 비용의 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현재의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비용 대신 국비로 전환하든지 혹은 국비에 일부 지자체 비용을 추

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 개입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문 위탁가정 풀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